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2.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5. 증권 등의 발행·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8. 기업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  
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허  
가·구조조정·감독
  2.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투  
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

정 · 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 · 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 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 감독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 · 개정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 · 감독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9.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  
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별표 1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3”을 “24”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5”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행

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4 중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란 다음에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p>	<p><u>&lt;삭 제&gt;</u></p>
<p>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생략)</p> <p>② 「<u>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u>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하며,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p> <p>③ <u>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u></p> <p>④ <u>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청년정책과·자본시장과·</u></p>	<p>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  
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서민  
금융과장·가계금융과장 및 청  
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자본  
시장과장·자산운용과장 및 공  
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서기  
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  
관으로 보한다.

⑤ ~ ⑧ (생략)

⑨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  
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  
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  
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  
감독
5. 증권 등의 발행·유통에 관  
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

③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삭제>

독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7. 삭제

8.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관리·감독

9. 기업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  
독

12.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  
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  
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  
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  
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

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⑩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2.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

<삭 제>

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⑪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삭 제>

제·개정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

· 감독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제도연구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

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9.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

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

리·감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

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

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

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

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

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5. 증권 등의 발행·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8. 기업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2.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  
문업자·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허가  
· 구조조정·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  
구의 관계회사의 등록·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  
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  
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  
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투자자  
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  
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

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개정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감독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9.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  
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  
-----  
-----  
-----

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2. (생략)  
<신설>

-----.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 신 · 구 정원 대비표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30</u>	• <u>232</u>	+2
일반직 계	• <u>227</u>	• <u>229</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u>10</u>	• <u>11</u>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25</u>	• <u>26</u>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u>23</u>	• <u>24</u>	+1
	•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5</u>	<u>4</u>	-1
•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230</u>	• <u>232</u>	+2
일반직 계	• <u>227</u>	• <u>229</u>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u>10</u>	• <u>11</u>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25</u>	• <u>26</u>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u>24</u>	• <u>25</u>	+1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 <u>5</u>	• <u>4</u>	-1

	.	.	.	
	.	.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1	70	-1
일반직 계	63	62	-1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	10	-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1	70	-1
일반직 계	63	62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	13	-1
·	·	·	
·	·	·	